

내부감사인 윤리강령

(Code of Ethics)

I. 개요

윤리강령의 제정 목적은 내부감사 임무를 수행하는 직무에 윤리 의식을 조성시키기 위함이다.

내부감사 직무란 한 조직의 업무수행의 가치를 증대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설계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과 컨설팅 활동이다. 이것은 체계적이고 훈련된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리스크관리, 통제 그리고 지배구조 프로세스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시켜 조직이 그 목표를 완수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윤리강령은 리스크관리, 통제 그리고 지배구조 운영에 관한 객관적 검증을 함에 있어 신뢰의 기반 위에 있어야 하는 내부감사활동 직무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다. 이런 윤리강령 제정으로 내부감사 활동의 정의는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1. 내부감사 직무 및 감사수행과 관련되는 원칙(Principles)
2. 내부감사인에게 요구되는 행동규범(Rules of Conduct), 이런 규범은 원칙을 해석하여 실제로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며, 내부감사인의 윤리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를 갖는다.

직무수행방안(Professional Practices Framework) 및 국제내부감사인협회(IIA)의 여타 관련발표문의 제정과 함께 윤리강령은 내부감사인인 다른 사람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지침이 된다. 내부감사인이란 IIA 회원, IIA 로부터 전문자격증을 받았거나 받기 위해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내부감사 직무의 개념정의 하에서 내부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 적용 및 시행

본 윤리강령은 내부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기관 모두에게 적용된다.

국제내부감사인협회(IIA) 회원, IIA 로부터 전문자격증을 받았거나 받기 위해 준비하는 수험생의 윤리강령 위반은 협회의 내규 및 행정처리 지침에 따라 평가되고 관리될 것이다. 본 행동규범에 어떤 특별하게 지켜야 할 행동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행동이 받아들여 질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내부감사인자격증 소지자 또는 준비자는 이 규범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징벌적(비도덕적)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 원칙(Principles)

내부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준수해야 한다.

성실한 책임감(Integrity)

내부감사인의 성실한 책임감은 신뢰감을 만들어 주며, 감사와 관련하여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객관성(Objectivity)

내부감사인은 검토되는 활동이나 프로세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보고하는데 있어서 최고수준의 직업인으로서의 객관성을 보여야 한다. 내부감사인은 감사업무와 관련된 상황에 대하여 균형 잡힌 평가를 해야 하며, 판단을 함에 있어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이해에 따라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보안의식(Confidentiality)

내부감사인은 그들이 입수한 정보의 가치와 소유권을 존중하고, 법률적 또는 직업인의 의무로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절한 승인 절차 없이는 정보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감사 역량(Competency)

내부감사인은 내부감사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경험을 가져야 한다.

! 행동규범(Rules of Conduct)

1. 성실한 책임감(Integrity)

내부감사인은:

- 1-1. 그 업무를 정직, 근면 그리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1-2. 법을 준수하고, 법과 직업인으로 요구되는 것을 밝혀야 한다.
- 1-3. 고의로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돼서는 안 되며, 내부감사 업무 종사자로서 또는 직원으로서 불명예스런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1-4.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조직의 목표를 잘 이해하고 공헌해야 한다.

2. 객관성(Objectivity)

내부감사인은:

- 2-1. 그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활동이나 관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참여는 조직의 이해와 상충될 수 있는 활동이나 관계를 포함한다.
- 2-2. 그들의 직업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저해시킬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2-3. 그들이 조사하여 알게 된 모든 사실들을 밝혀야 한다. 만약 밝히지 않는다면 검토한 내용의 결과보고를 왜곡시키게 될 수 있다.

3. 보안의식(Confidentiality)

내부감사인은:

- 3-1. 그들의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의 사용과 보호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 3-2.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든지 법에 반하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타당한 조직의 목표에 방해가 되는 식으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4. 역량보유(Competency)

내부감사인은:

- 4-1. 자신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 4-2. 내부감사직무수행기준(Standards)에 따라 내부감사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 4-3.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무 숙련도를 높여 감사서비스의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